

연번	성명	국적	생년월일	성별	주소
201	WEAR S*	뉴질랜드	197110*	남	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9길*
202	WEI MI*	중국	197604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송정길 4*
203	WEI SH*	중국	199003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우*
204	WEI WE*	중국	197003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남8길*
205	WEN CH*	한국계중국인	195705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*
206	WU SHU*	중국	197708*	여	전라남도 여수시 가곡길 1*
207	WU YAN*	중국	196411*	여	전라남도 순천시 덕월3길 *
208	XIANG *WEI	중국	198211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1*
209	XING H*N	중국	198509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*
210	XU HAI*	중국	197911*	남	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북7길*
211	XU JIF*	한국계중국인	196401*	남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여순*
212	YABE H*	일본	196106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*
213	YANG Y*N	중국	197103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신흥중1길*
214	YAO XI*	중국	198312*	여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*
215	YAO YU*	중국	197510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월*
216	YIN SI*	중국	194102*	남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입석*
217	YIN TA*	한국계중국인	197506*	남	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읍*
218	YOSHII*NA	일본	198510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*
219	YU XIA*	중국	196807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강청*
220	YU YIN*	중국	198801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장선배기길*
221	YULDAS*UGLOY	우즈베키스탄	199212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*
222	ZHANG *	중국	197309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지봉로 4*
223	ZHANG *	중국	197705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상암로 1*
224	ZHANG *	중국	198203*	여	전라남도 여수시 구봉길 7*
225	ZHANG *	중국	198303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여문2로 *
226	ZHANG *G	중국	198807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*
227	ZHANG *IAO	중국	198902*	여	전라남도 순천시 독실5길 *
228	ZHANG *N	중국	197805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도원로 2*
229	ZHANG *N	중국	198412*	여	전라남도 순천시 풍덕주택길*
230	ZHANG *NG	중국	198108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강*
231	ZHANG *YING	중국	197207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왕궁길 6*
232	ZHAO C*ANG	중국	196505*	여	전라남도 순천시 동신흥5길*
233	ZHAO F*	중국	197602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*
234	ZHAO M*	한국계중국인	197901*	남	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*
235	ZHAO T*G	중국	196511*	여	전라남도 순천시 연향1로 *
236	ZHOU D*	중국	198602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*
237	ZHOU H*	중국	197006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덕양로 1*
238	ZHOU H*I	중국	196601*	남	전라남도 여수시 통제영5길*
239	ZHOU J*	중국	196402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조*
240	ZHU XI*	중국	197901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남4길*
241	ZONG M*A	중국	196803*	여	전라남도 여수시 대첩비길 *
242	ZUO YO*	중국	197903*	여	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2*

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-426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 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2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사유

- OECD 등 국제기구의 독성시험방법 수정 보완에 따른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[별표] 화학물질 시험방법(既存 118항목)에 대해 변경(17개 항목), 삭제(1개 항목) 및 추가(5개 항목)하려는 것임
- OECD 등의 동물대체시험방법 등 최근 갱신된 내용으로 유해성시험방법을 제·개정하여 급변하는 국제적 화학물질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

2. 정내용

- 건강영향 시험분야 20개 항목 및 물리화학적성질 3개 항목 시험방법 개정

제2장 물리화학적성질 시험분야

제7항 입자크기 분포/섬유길이 및 직경 분포시험(전부 개정)

제21항 나노물질의 입자크기 및 크기분포 시험(신설)

제22항 모의 환경매체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 시험(신설)

제5장 건강영향 시험분야

제7항 90 일 반복 경구투여독성시험(전부 개정)

제12항 최기형성시험(전부 개정)

제17항 생식능 및 차세대 영향시험(삭제)

제19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(피부 전기저항성시험)(전부 개정)

제20항 생체 외 피부 부식성시험(인체 피부모델시험)(전부 개정)

제21항 발암성시험(전부 개정)

제27항 생체 외 피부 자극성시험(인체피부모델시험)(전부 개정)

제35항 피부과민성시험(국소림프절시험, LLNA: BrdU-ELISA)(전부 개정)

제36항 화학적 피부과민성시험(펩티드결합성시험)(전부 개정)

제37항 생체 외 피부과민성시험(ARE-Nrf2 루시퍼라제시험)(전부 개정)

제45항 생체 외 3T3 NRU 광독성시험(전부 개정)

제47항 소 각막 혼탁도와 투과도(BCOP)시험(전부 개정)

제48항 닭 적출 안구(ICE)를 이용한 눈 자극시험(전부 개정)

제51항 확장 1세대 생식 독성시험(전부 개정)

제52항 만성 독성시험(전부 개정)

제53항 만성독성/발암성 병합시험(전부 개정)

제64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(인체각막모델시험)(전부 개정)

제68항 비트리겔(Vitrigel)을 이용한 눈 자극성 시험(신설)

제69항 활성산소종 측정을 이용한 광반응성 시험(신설)

제70항 생체 외 눈 자극 및 손상시험(거대분자 시험법)(신설)

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0년 10월 1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169, 팩스 032-568-2037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」 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) 내 정보마당/법령정보/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

●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-2호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처분사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제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2일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공시송달

1. 제 목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
2. 근 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

처분의 제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	
당사자	성 명	권 ○ 찬 (51년생)
	주 소	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. (2016.05.13.)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8210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	

처분의 제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	
당사자	성 명	김 ○ 영 (78년생)
	주 소	전라북도 익산시 (이하 생략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7.09.27.)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86949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	

처분의 제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	
당사자	성 명	김 ○ 영 (77년생)
	주 소	경기도 남양주시 (이하 생략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음. (2019.02.22.)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11882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	